

1. 개정이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신고·변경신고(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기존에 규정한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의 허가·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의2의 제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 또는 반입”을 “수입등”으로, “수입·반입”을 “수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수입 또는 반입”을 각각 “수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반입”을 “수입등”으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고)”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 또는 반입”을 “수입등”으로, “수입·반입”을 “수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수입 또는 반입”을 각각 “수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반입”을 “수입등”으로 한다.

제11조의4의 제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관련 변경신고)”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수입 또는 반입”을 “수입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량 또는 반입량”을 “수입등의 수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반입”을 “수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반입 허가서”를 “수입등 허가서”로, “수입·반입 신고”를 “수입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반입 허가서”를 “수입등 허가서”로, “수입·반입 신고”를 “수입등 신고”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9호의6서식 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

※ []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십시오.(복수 표기 가능)

① 수입 ②반입 ③사육 ④재배 ⑤양도 ⑥양수 ⑦보관 ⑧운반 ⑨유통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생물 관련 내용	일반명	학 명
	원산지	
	제공국	
	용 도	
	보관시설 소재지	
	관리방법	
	선적항	도착항
	송장(날짜·번호)	품목번호(HS)
	품명(규격)	수량(단위)
	단 가	금 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 환경 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송계획서 1부 4.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5.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1부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1부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생물 관련 내용	일반명	학명	
	원산지		
	제공국		
	용도		
	보관시설 소재지		
	관리방법		
	선적항	도착항	
	송장(날짜·번호)	품목번호(HS)	
	품명(규격)	수량(단위)	
단가	금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1부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허가번호	제 호	유효기간	발급일 부터 180일
허가자 인적사항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승인내용	일반명	학명	
	용도		
	지정구역	원산지	
	제공국	수량(단위)	
	보관시설의 소재지		
	품목번호(HS)		
	허가조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직인

준수사항

1. 용도, 수량과 승인조건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생물 관련 내용	일반명	학명	
	원산지		
	제공국		
	용도		
	보관시설 소재지		
	관리방법		
	선적항	도착항	
	송장(날짜 · 번호)	품목번호(HS)	
	품명(규격)	수량(단위)	
	단가	금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 환경 청 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송계획서 1부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1부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자 인적사항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승인내용	일반명	학명
	용도	
	지정구역	원산지
	제공국	수량(단위)
	보관시설의 소재지	
	품목번호(GS)	
	허가조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직인

준수사항

1. 용도, 수량과 승인조건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앞쪽)

제 호

검 사 원 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 × 90mm [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검 사 원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외반출 승인 여
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
인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
허가 여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부, 생태
계교란 생물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여
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
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여부 및 관리실태
조사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국에 고발하

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생략)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① ----- ----- ----- 수입등 ----- ----- ----- 수입등 -----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 또는 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6. 수입등-----

7. 수입등-----

② -----

----- 수입등 -----

-----.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① -----

----- 수입등 -----

----- 수입등 -----

-----.

1. ~ 5. (생 략) 6. <u>수입 또는 반입</u>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u>수입 또는 반입</u>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u>수입·반입</u> 신고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제11조의4(<u>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관련 변경신고</u>)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u>수입 또는 반입</u>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u>수입량 또는 반입량</u> 3.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수입등</u>----- ----- ----- 7. <u>수입등</u>----- ----- ② ----- ----- ----- ----- <u>수입등</u> ----- ----- ----- -----. 제11조의4(<u>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u>) ① - ----- ----- -----. 1. ----- <u>수입등의</u> ----- ----- ----- ----- 2. ----- <u>수입등의 수량</u> 3. ~ 5.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 확인서

2. (생 략)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② -----

----- 수입등 -----

-----.

1. -----
----- 수입등 허가
서 -----

----- 수입등 신고 -----

2. (현행과 같음)

③ -----

----- 수입등 허가서 -----

----- 수입등 신고 -----

-----.